

보정서

사 건 2019구합7096 방송통신심의위원회결정취소 및 재심의청구의 소
원 고 전민정
피 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답변내용

악의적으로 왜곡된 방송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시청해 회복하기 어려운 법익침해가 발생하였고, VOD 영상물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법익침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방심위는 직권에 의한 제제조치는 고사하고 시청자의 민원을 접수하고도 제대로된 처분이 없이 위법상태를 방치하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어서 법원의 통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1. 민원처리회신의 행정처분성 여부

○ 근거규정 : 민원처리에관한법률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다(제2조 제1호). 법정 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제35조 ①).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동조 ②).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동조 ③).

○ 소 결 : 민원처리회신은 행정처분입니다.

피고 방심위의 권고결정이라는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원고의 이의신청은 행정심판 청구이며 행정심판에서 피고의 재심의 결정을 하지 않겠다는 민원처리회신은 기각재결

(거부처분)과 본질이 같습니다. 행정심판 결과에 시청자가 불복할 수 있는 길은 행정소송입니다. 원고는 방심위가 심의규정을 위반한 관련자들에게 대하여 중징계 등 처분을 방통위에 요구하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면 방심위의 결정과 민원회신은 처분성이 인정되며 따라서 원고의 소제기는 적법합니다.

2.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또는 권리의 근거

○ 방심위의 권고결정은 복효적 행정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방송법 제100조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법행위에 대한 피고의 권고결정은 가해자인 KBS측에는 경미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익처분이고, 원고 등 시청자에게는 불이익처분입니다. 대법원은 제3자의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원고가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있다(대법원 2006두330전합)”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의 책무)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의 권익보호와 정보이용능력의 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안의 본질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모독은 물론이고 유족과 대다수 국민의 명예감을 해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은 형사처벌이 가능한데, 대한민국 및 국민의 대표성을 지닌 국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행정제제조차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대는 소를 포함한다’는 법리에 위반됩니다. 또한 인터넷 망을 통해 여전

히 문제의 ‘도올아인 오방간다’ 프로그램을 상시 시청할 수 있도록 방치한다면 정의를 파괴하는 역사적 반역이 될 것입니다.

○ 방송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청자의 권익보호) 방송사업자는 시청자가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또는 제작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방송의 결과가 시청자의 이익에 합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방송의 공적 책임) ①방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방송은 **국민의 화합과 조화로운 국가의 발전 및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지역간·세대간·계층간·성별간의 **갈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방송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④방송은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⑤방송은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의 선도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음란·퇴폐 또는 **폭력**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①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②방송은 **성별·연령·직업·종교·신념·계층·지역·인종**등을 이유로 **방송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종교의 선교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방송분야의 범위 안에서 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방송은 국민의 **윤리적·정서적 감정**을 존중하여야 하며, 국민의 기본권 옹호 및 국제친선의 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④방송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신장하여야 한다. ⑤방송은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방송은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⑦방송은 **사회교육기능**을 신장하고, 유익한 생활정보를 확산·보급하며, 국민의 **문화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⑧방송은 **표준말**의 보급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언어순화**에 힘써야 한다. ⑨방송은 정부 또는 특정 집단의 정책등을 **공표**

함에 있어 의견이 다른 집단에게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또한 각 정치적 이해 당사자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균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중계유선방송 및 전광판방송의 내용과 기타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 중 방송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방송 또는 유통된 후 심의·의결한다. 이 경우 매체별·채널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3조(심의규정) ①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審議規程"이라 한다)을 제정·공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심의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와 인권존중에 관한 사항
2. 건전한 가정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3.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형성에 관한 사항
4. 공중도덕과 사회윤리에 관한 사항
5. 양성평등에 관한 사항
6. 국제적 우의 증진에 관한 사항
7. 장애인등 방송소외계층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8. 인종, 민족, 지역, 종교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에 관한 사항
9. 민족문화의 창달과 민족의 주체성 함양에 관한 사항
10. 보도·논평의 공정성·공공성에 관한 사항
11. 언어순화에 관한 사항
12. 자연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13. 건전한 소비생활 및 시청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14. 법령에 따라 방송광고가 금지되는 품목이나 내용에 관한 사항
15. 방송광고 내용의 공정성·공익성에 관한 사항
16. 기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업무에 관한 사항

제86조(자체심의) ①방송사업자는 자체적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심의할 수 있는 기구를 두고, 방송프로그램(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제외한다)이 **방송되기 전에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제100조(제재조치등) ①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외주제작사가 제33조의 심의규정 및 제74조제2항에 의한 협찬고지 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위반의 사유,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제재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5조에 따른 시청자불만처리의 결과에 따라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규정 등의 위반정도가 경미하여 제재조치를 명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책임자나 관계자에 대하여 권고를 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삭제
2. 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3. 방송편성책임자·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4. 주의 또는 경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가 해당방송프로그램의 출연자로 인하여 이루어진 경우 해당방송사업자는 방송출연자에 대하여 경고, 출연제한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불복규정을 정하지 않은 것은 시청자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임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전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기본권 구제기관인 법원에서 재판으로 구제하여 주어야 함은 당연합니다.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5조(제재조치 등) ① 심의위원회는 방송 또는 정보통신의 내용이 제24조의 심의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제재조치 등을 정할 수 있다.

1.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권고 또는 의견제시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에 대한 취급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제재조치 및 제21조제4호의 시정요구를 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심의위원회가 시정요구를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①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 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8호.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 **헌법상 재판청구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심의위원회가 시정요구를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⑥).

시정요구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게시판 관리·운영자 또는 해당 **이용자**는 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제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⑤항).

-> 불복여부를 방통위가 결정하게 한 것은 자의적입니다. 시정요구에 당사자는 당연히 불복할 수 있고 방송법 제100조의 제재조치에는 권고결정을 포함합니다. 민원처리법 제35조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를 종합하면 당사자에는 민원인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식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⑤항 상 이용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쟁송도 할 수 있습니다.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을 포함하여 국민이 피해를 입고 있다면 불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적으로 명문의 근거가 애매하더라도 입법보완이 될 때까지는 개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법제하에서 시청자도 당사자로서 당연히 쟁송할 수 있다고 봐야합니다.

만일 위 두 조항이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에 대하여만 권리구제수단을 부여하고, 시청자인 국민의 이익은 침해받더라도 불복수단을 제한한다고 한다면 헌법 제27조 제1항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따라서 처분의 상대방을 좁게 KBS법인에게만 인정하여 자연인인 시청자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헌법 제12조 제1항 평등의 원칙에 위반됩니다. 국가 또는 사회적 기관끼리 적당히 야합하여 국민을 무시해도 국민은 당하기만 해야 한다면 불법국가로 전락되는 결과가 됩니다. 국가나 공공기관이 국민의 개개인의 기본권과 국민 기본권의 합, 즉 더 큰 기본권인 공익을 침해하더라도 수인해야만 한다면 이것은 기본권의 사각지대라 할 수 있습니다. 사법기관은 이러한 행정부의 불합리와 불의 그리고 기본권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통제하고 정의를 판단함으로써 보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소 결

시청자인 국민은 쟁송을 통해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있습니다. 즉 처분의 근거법령인 방송법 등은 국민의 법률상 이익을 보장하고자 하는 법이므로 국민이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게 되면 당연히 원고적격을 가지게 됩니다.

시청자인 동시에 주권자인 국민은 공정성, 균형성, 객관성 등을 위반하는 방송을 시청하고 분노를 넘어서 자유민주체제가 전복되어가는 구체적 침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법률상 이익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만일 방심위가 위법행위를 해도 통제할 수 없다면 방심위에 절대적인 지위가 부여되고, 사법기관은 기본권 최후보루의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결 론

위법한 ‘도올아인 오방간다’ 방송물에 대한 원고의 민원은 법정민원이었고, 방심위의 권고결정과 재심의 기각결정은 행정처분이며, 복효적 행정행위에 해당합니다. 여타 관계법령 등에 근거할 때 원고의 법률상 이익은 충분히 존재하며 이러한 법률상이익은 과거의 위법한 행위에서 뿐만 아니라 법익침해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인정필요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즉 문제의 방송물은 KBS 방송국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누구나 지금도 볼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일반국민도 아닌 대한민국의 대표성을 가지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에 대한 명예가 계속 훼손되고, 대한민국 국민과 국격이 훼손되고 있다는 점에서 하루빨리 불법을 제거하고 불법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제재가 가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녀들을 포함한 우리 시청자는 도덕적이고 인격적으로 건전한 방송을 시청할 권리와 악의적으로 왜곡된 방송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019. 12. 18.

원고 전민정 (날인 또는 서명)

서울행정법원 귀중

<국민탄원서>

이승만의 자유 건국이념으로 건국된 대한민국이 도올 김용옥의 발언이 유폐됨으로써 체제를 전복하려는 세력과의 전선에서 더욱 불리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교과서에서는 자유를 빼고, 방송통신심의규정에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도 삭제하고, 방송에서는 이승만 흠집내고 이렇게 계속 밀리다 보면 우리가 그동안 누려왔던 자유를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누려왔던 자유라는 법적이익을 지키지 못하면 죽음과도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자유를 지켜야 하고 그것이 법치국가 틀 속에서 가능해야 합니다.

이승만 지킴이는 이승만 한 개인을 지키자는 뜻이 아닙니다. 이승만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자유를 지키자는 뜻입니다. 이승만은 건국이념을 바탕으로 한 건국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체제와 동일시됩니다. 건국대통령에 대한 공격은 자유라는 근본가치를 허무는 것이므로 막아야 합니다.

자유가 공격을 받고 있는데 정부가 이런 상황을 통찰하고 적극적으로 제재하고 막아야 함에도 형식적으로 행정소송 대상이 되냐 안되냐 할 때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체제를 바꾸려는 반체제 세력과의 싸움인데 정부가 이것을 제재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벼랑 끝에 와있습니다.

법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가 헌법에서 누리는 가장 큰 법률상 이익인 자유를 도려내는 위중한 상황에서 국민이 이런 잘못을 바로 잡을 기회가 없다면 행정편의주의일 뿐이고 법치국가가 아닙니다. 주권자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같은 공권력을 바로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재판에서 해주어야 합니다.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국가가 직무유기를 하면 안됩니다.

오염물질이 공기 중에 떠다니도록 하는 악인이 있는데 조심해달라고 권고결정만하

고 오염물질 제거 및 원인자 제재를 하지 않는다면 국민은 오염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고통받는 것을 수인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정신적 오염물질이 한반도를 유행병처럼 오염시켜도 수수방관만 하자는 국가권력이어서는 안됩니다.

정부가 심의규정대로 본연의 일을 안했습니다. 정부가 대충 결정했고, 이에 대해 불복을 못하게 한다면, 잘못된 처분을 해도 국민은 수긍만해야 된다면, 국민의 기본권은 어디가서 보장받으라는 말인가요? 방송사의 잘못을 생업에 바쁜 국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게 만드는 것도 분통이 터지는데 방심위의 결정을 시정까지 요구하게 만들고 있으니 방심위는 도대체 존재이유가 무엇인가요? 국민 세금으로 봉급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감독하는 국가기관이 피감독기관의 잘못을 제대로 시정해주어야 하고 시정이 안될 때 사법부에서 시정할 수 있는 것이 우리 헌법질서입니다. 이와 같이 제도권에서 국민이 보호받지 못한다면 저항권행사를 하라는 뜻인가요? 대한민국 헌법정신은 사회혼란을 조장하라는 뜻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허무는 공격이나 시도들이 잘못된 것임을 법정에서 확인하여 사회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재판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